#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68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김윤덕·정춘숙·임종성

이정문・한병도・신영대

이상직 · 안호영 · 송갑석

박영순 · 신동근 · 김정호

김수흥ㆍ허 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방식은 낮은 수수료율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시 토지현황 조사 등의 시기를 사업지 구 지정고시 이후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실 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 하는 등의 일부개편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한다)에게"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 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는 기간 내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 및 제6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을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2의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 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 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 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 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에게-----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신 설>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 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취 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 ③ (생 략)

야 한다.

③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 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현행 과 같음)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 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는 기간 내에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 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 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 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 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 <삭 제> 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 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 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야 한다.
- ⑤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 <삭 제> 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4 항에 따른 공람기간 안에 지적 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생략)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⑦ ------제6항까지 및 제6 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조제3항·제4항-----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 ⑧ (생략)
- 관청은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 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대상 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 ⑥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
-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
  -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u>에는</u>-----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 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_\_\_\_\_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u>위임·위탁</u>) <u>①</u>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의2의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2(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본다.